

김선화 / 5월+6월 / 실전 GS / 3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41738	16	13	16	10.5	55.5	1	2.13%	47
541984	20	12.5	12.5	10.5	55.5	1	2.13%	
543513	17.5	13	15.5	8.5	54.5	3	6.38%	
544137	17	10	19	7	53	4	8.51%	
542033	17	11	13	10.5	51.5	5	10.64%	
542615	16	10	12	13	51	6	12.77%	
544055	15.5	10	15	10	50.5	7	14.89%	
544678	16	11	16	7.5	50.5	7	14.89%	
542424	15	9.5	15.5	9.5	49.5	9	19.15%	
543347	15	12	14	8	49	10	21.28%	
544817	13.5	13	13.5	8.5	48.5	11	23.40%	
535464	11.5	13	13.5	10	48	12	25.53%	
541787	14.5	11.5	11.5	10.5	48	12	25.53%	
544656	14	7	16.5	10	47.5	14	29.79%	
541764	17.5	10.5	14	4.5	46.5	15	31.91%	
544722	13.5	7	15.5	10.5	46.5	15	31.91%	
543546	15.5	11.5	12	7	46	17	36.17%	
542706	13.5	9	12.5	8	43	18	38.30%	
544542	15.5	8	10.5	9	43	18	38.30%	
542812	15.5	7.5	11	8	42	20	42.55%	
543675	13	10.5	11.5	7	42	20	42.55%	
542521	11.5	7.5	12.5	10	41.5	22	46.81%	
542789	17	4	13	6.5	40.5	23	48.94%	
542690	13.5	13	9	4.5	40	24	51.06%	
555192	14	8.5	11	6.5	40	24	51.06%	
544295	13.5	8	10.5	8	40	24	51.06%	
544469	15.5	9.5	10.5	4	39.5	27	57.45%	
544517	14	7.5	10.5	7.5	39.5	27	57.45%	
542660	10.5	8.5	11	8.5	38.5	29	61.70%	
544353	12.5	2	15.5	8.5	38.5	29	61.70%	
543817	12.5	11.5	14	0	38	31	65.96%	
543322	15.5	7.5	13.5	0	36.5	32	68.09%	
111111	13	10	11.5	1.5	36	33	70.21%	
543093	8	6	13	8.5	35.5	34	72.34%	
542787	11.5	7.5	11.5	5	35.5	34	72.34%	
544535	9	7.5	12	7	35.5	34	72.34%	
544813	11.5	7.5	10.5	4.5	34	37	78.72%	
541740	13	11	9.5	0	33.5	38	80.85%	
542650	12.5	3.5	13.5	1	30.5	39	82.98%	
541783	12.5	6.5	8	1.5	28.5	40	85.11%	
542824	12.5	10	6	0	28.5	40	85.11%	
535255	8.5	10.5	8.5	0	27.5	42	89.36%	
541184	13.5	5.5	8	0.5	27.5	42	89.36%	
535647	9.5	9.5	5.5	2.5	27	44	93.62%	
543496	8	6.5	12.5	0	27	44	93.62%	
535325	10	13.5	0	0	23.5	46	97.87%	
542512	9.5	11.5	2	0	23	47	100.00%	

<p style="text-align: center;">김선화/5월/실전GS/3회/1번</p>	<p>채점자</p>
	<p>오규해</p>
<p>1. 전반적인 총평</p> <p>이번 3회차 1문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여부, 저작인격권 침해여부를 물어보는 익숙한 문제로 설문 자체에서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명확한 문제였습니다.</p> <p>2주차여서 그런지 많은 분들의 답안지가 조금 더 정갈해지고 강약조절이 조금씩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이 사건 대본에 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여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 물어봤으니 묻는바 대로 침해요건을 하나하나 검토해주시면 됩니다.</p> <p>저작물인지 여부는 간단하게만 적어주시고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 이용행위, 정당권원 다 검토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누락 없이 조금씩이라도 전부 검토해주세요. 또한 제한사유는 괄호에서 검토하지 않는다 했는데 적으실 경우 점수도 못 받으실 뿐더러 답안 인상도 좋지 않았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저작인격권 침해여부를 물어보는 문제로서 배점도 12점으로 저작인격권을 모두 검토해주시면 됩니다.</p> <p>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항상 누락 없이 다 검토해주세요. 조문에서 찾는 것도 어렵지 않고, 점수 하나하나가 패스하는데 소중한답니다!</p> <p>저작인격권, 즉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의 세 대목차로 나눠주시고 그 안에는 조문, 판례, 사안의 순서대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특히 저작권은 이 틀을 잘 갖춰주세요.</p>	

꼭 목차로 보여주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은 더욱 중요한 것이 민특 상보다 상대적으로 공부양이 부족해 아는 것이 많지 않으니, 목차로라도 타겟 조문 등을 숙지하고 있다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3) 설문 3

설문 3은 익숙하지만은 않은 저작권 말소등록 청구여부에 관한 문제로, 답안처럼 작성해주신 분은 많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나왔을 경우 해당 조문을 찾아서 조문을 분설해 풀어야 합니다.

제55조의3 제1항을 정확히 적어주신 분은 소수였는데 그래도 주변의 비슷한 조문 등을 적어주시고, 사안을 풀어주신 분들께 일정 점수 드렸습니다. 시험장에서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적당히 목차로 조문, 사안 정도 보여주면 기본점수는 받을 수 있으니 잘 대응해주세요!

3. 소결

지난주보다는 답안의 누락도 적고 사안 포섭도 좋아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투자 할 필요 없이 내가 아는 것을 누락하지 않을 정도로만 계속 공부해주시고 감만 유지해주세요! 다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5월/실전GS/3회/2번	채점자
	조은석

< 채점기준 >

문제	설문	채점기준	배점	최고점
2	1	甲의 행위① - 복제(법 2조 21호) 언급	1	10
		甲의 행위② - 전송(법 2조 10호) 언급	1	
		丙의 지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법 2조 30호) 언급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판례 언급 (키워드 : 불법성 명백, 구체적 인식하거나 가능성이 외관상 명백, 기술적, 경제적으로 통제 가능 -> 조치 의무 O, 위반하여 침해 용이하게 하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유① - 판례 언급 (키워드 : 구체적 인식X,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X -> 의무X)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유② - 법 102조 2항 언급	1	
		소설문1) 해결 - 丙 면책 가능 (판례에 따라)	1	
		소설문2) 해결 - 丙 면책 가능 (법 102조 2항, 판례에 따라)	1	
	2	甲의 행위① - 복제(법 2조 21호) 언급	0.5	5
		甲의 행위② - 전송(법 2조 10호) 언급	0.5	
		甲의 행위③ - 배포(법 2조 23호) 언급	0.5	
		법 46조 1항 및 2항 언급	0.5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계약으로 정한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저작권자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 판례 언급 (키워드 : 채무불이행은 별론, 침해는 아니다.)	2	
		설문(2) 해결 - 乙주장 부당 (즉, 침해X) (문제가 수정되어, 복제권, 공중송신권은 (판례에 따라) 비침해, 배포권은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 침해라는 결론도 가능)	1	

1. 총평

실전GS 수강생분들의 실력이 다들 높으셔서, 논점이탈을 하신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법조문을 정확하게 표기하였는지, 판례를 임의적 수정 없이 정확하게 현출하였는지에 따라 점수가 나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조문과 판례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해주시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1) 설문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논점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판례(방조에 의한 공동불법 행위 성립요건 및 OSP 면책 요건)를 현출하고, OSP 책임 제한 조문(제 102조)에서 관련 있는 조문을 찾아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자주 등장하는 판례여서 많은 분들이 잘 작성해주셨고, 조문의 경우 누락하신 분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제102조의 내용을 간단히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설문 2

타겟 판례를 모를 경우, 답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용과 사용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용 방법, 목적 등은 이용허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답안이 논리적이었습니다.

3. 소결

3회차 GS도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GS 시험도 파이팅입니다.
저작권법 PASS와 합격을 기원합니다!

김선화/5월/실전GS/3회/3,4번	채점자
	유화정

1. 3문 채점평

이 문제는 중요한 건축저작물에 관한 판례인 골프코스의 저작물성을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침해권과 연계하여 물어본 문제입니다.

(1) 설문 1

이 사건 설계도의 저작물성과 저작물 종류를 검토하는 기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건축저작물성에 관한 논점은 검토해주셨으나, 도형저작물성에 대한 검토는 누락하셨습니다. 도형저작물과 건축저작물은 둘 다 기능적 저작물로, 검토하실 때 함께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작물성 검토 시에 이 사건 설계도의 창작성을 검토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강사님 답안지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요건 중 유효한 저작물 여부를 검토하면서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배점상 목차를 짜시면서 고민해서 배치하시다 보면 설문별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문 2에 안 쓰셨어도 점수를 드렸습니다.

(2) 설문 2

문제 길이 때문에 乙이 자백한 논점을 캐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乙이 이 사건 영상이 이 사건 골프장을 촬영하여 그대로 재현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자백에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① 유효한 저작물 여부, ② 이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에서 명확히 乙이 자백한 논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말라고 한정해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서술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설문 2에서는 복제와 복제물에 대한 논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복제권 침해 검토 시 설계도를 바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설계도를 복제한 복제물인 이 사건 골프장을 다시 복제하여 복제권이 침해된 것임을 정확히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이 여러 가지 섞여서 나오는 문제에서 각각의 대상별로 경우를 확실하게 나누어서 문제를 파악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실수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설문 3

이 설문에서는 저작권법상의 제한사유에 대해 판단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점이었던 ‘개방된 장소의 항시 전시된 건축저작물의 복제(제35조 제2항)’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것은 맞으나 乙의 이용행위가 업으로서 사용된 점에서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침해가 된다고 판단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강사님께서 답안지를 쓰신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므로 불특정 다수인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 4문 채점평

이 문제는 조문 찾기 문제입니다. 저작권법의 경우 처음에 조문이 낯설고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조문에 익숙해지고 나면 암기량도 현저히 줄고 낯선 문제가 나와도 법전에서 조문만 잘 찾으면 충분히 잘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설사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조문집을 펼쳐서 키워드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상 저작권법에 있는 모든 조문을 다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기에 이런 돌발 짱돌 조문에 관한 문제도 연습해 보아야 합니다. 남은 회차 동안에도 모르는 조문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최대한 시간 내에 찾아서 답안을 작성해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소설문의 형식이 같으므로 주 논점 파악만 하시면 금방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잡는 데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4문에 배치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4문을 못 푸신다면 큰 손해이니 반드시 시간 내에 문제를 끝까지 푸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전반적인 총평

안녕하세요, 3회차 3,4문 채점자 유화정입니다.

6월 실전 개강 후 둘째 주임에도 3, 4문 서술을 마무리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아마 4문에서 처음 보는 낯선 내용이 나와서 당황하신 분들이 시간 압박을 이기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시험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시간 내에 네 문제를 다 풀어내시는 것을 목표로 지금부터는 다른 문제들의 답안 완성도를 포기하더라도 34, 26, 34, 26분의 시간제한을 의식적으로 지켜서 꼭 시간 내에 4문제를 모두 건드리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서 내더라도 배점상 약 70퍼센트 정도의 점수를 주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패스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례현출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4문까지 조금씩이라도 쓰시면 “기본점수” 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2주가 남았으니, 꼭 시간 분배를 연습하셔서 4문제를 다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1]

I. 생물 1)

1. 눈알길리

무의 대분류에서 대한 광채 광각 또는 동공의 크기 등으로서 광채의 여부를 감지한다.

2. 광채의 조건

광각의 조건으로 ① 유효한 광각을 ② 이동하는 형 주로서 ③ 광각에 커야해야 되고 ④ 신경의 성이 있어야 한다.

광각의 조건으로 광각의 여부 등이 감지할 수 있다.

3. 무의 어 사건 대분의 광각성 (각각)

무의 어 사건의 광각성에서 생물의 광각성 인공의 는 바, 광각성은 인공이다.

A. 이동행위의 여부 조건

(1) 이동의 의미 (행위)

행위는 광각의 행태에 있어서 이동행위는 사물행위와 구별되는 것으로 광각 각 부분에서 대공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광각의 광각을 광각의 행태는 이동행위를 이루어 이동하는 것으로 이동행위에 해당한다. 선의 광각의 광각을 광각의 것으로 인정되는 이 여부를 적로 감지한다.

(2) 사안의 경위

- ① 甲은 乙에게 "연극 극본으로 각 시료 드림" 이라고 한바, 연극 대본으로 부러 연극 극본으로의 목적 저작물작성에 관한 이윤리락이 없음으로 불이 인정된다.
- ② 乙에게 乙은 그 저작 저작물 작성에 대한 이윤리락은 받은 것이다.

8. 식물의 재결

유명한 저작물인 연극 대본에 의거하여 작성된 그 저작 저작물이 해당해, 乙은 그 이윤리락을 받은 것이다. 그 저작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Good!

또 식물(2)

1. 논쟁점

이 사건 대본에 관한 저작권과 甲에게 원저작으로 저작인격권이 귀속되므로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퇴권청구권 침해 여부를 검토한다.

2. 공표권 침해 여부 검토 (소극)

(1) 외위 (저작권 제 11조)

저작물의 외위 저작물을 관행이나 관습에 따라 있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진다.

(2) 공표권의 (저작권 제 11조 제 2항)

저작자가 그 저작 저작물 작성에 대한 이윤리락은 한

정수에는 그 상대방식에 각각의 공통점을 두어준 것임
정당하다.

(3) 사안의 경우

- ① 다른 그래픽 저작물 작성에 이동작을 받은 것이며
- ② 다른 연극 A의 표지에 각/연출 C이래고 표지
공통점 2인 바, ③ 공통에 두어가 항상대로 특정
한 것에서 공통된 창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3. 상업용사권 침해 정도 (위주)

(가) 위주 (22개 123)

저작자는 저작물의 전부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판매에
대해 상당한 이익을 올린 권리를 가진다.

(나) 예외 (22개 23개 24개 25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래픽 저작물로 상업용사권의 대상이 되는지.

1) 작성

- ① 작성성은 그래픽 저작물로 인정받기에 이르러서 작성된
것으로 그 아예 해당한다고 한다.
- ② 작성성은 그래픽 저작물로 복제물이라 볼 수 없는 세로
화장물로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다.

기위(제)

기위(제) 입관은 동일하지 않으나, 위 저작물에

기초적이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상업목적의 대상이 되고 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일부 말 사인의 경우

과외적 저작물의 대상이 되는 등 저작물로 그 저작권 권리의 보호 필요성이 높고, 상업목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 사실 소결

과외적 저작물로 상업목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부합하는 사항은 없으므로 권리를 주장한다.

4. 동일성 유권 침해 정도 (소극)

(1) 외어 (지식기(33))

저작물에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기법의 동일성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2) 과외적 저작물 이외 저작이 있는 경우 (9월 9일)

9월 9일은 과외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 저작이 있는 경우 그 저작물이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창작성의 인정 또는 부본은 새로운 저작물에서 태어난 다고 그 외에는 과외적 저작물 작성을 위반한 이성 침해에 해당 하지 않는 다고 한다.

(3) 사안 외 경우

창작성적인 부분은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된 것이고 동작성이 유지되는 부분은 침해가 아니며, 그 외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이유적 요건만 보면 B가 작성권으로 볼 수 없다.

good!

II. 본문 (3)

1. 저작권 발생등록 신청 (지재553의 3)

(1) 외의 경우

저작권 등록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권리자를 작성권자로 인정하여 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 A권 사유

- ㉠ 저작권 등록부에 특정 사항 변경된 경우
- ㉡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는 경우
- ㉢ 등록에 말소를 원할 경우
- ㉣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원할 경우

2. 국분에 대한 저작권과 - C

이 A권 국분에 대한 저작권과는 C이다.

제53조에 의해 2차적 저작물은 동일적인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

3. 사안의 경우

甲은 국분의 저작권자가 아니라 말소등록을 할 수 없다.

20

개

말소합니다!



[문제-2] 13.5 Very good!!

I. 출제 (10)

1. 문제의 문제

이 사건 이마지 관련하여 특허 청구가 법적
으로 이런 특정 사항 변경 가능,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문제이다.

2. 특허 청구 의 법적 의미

(1) 이 사건 특허권 지속 - 특허 청구

1) 특허 의 의의 (제22조 2항)

인쇄. 사건 결정 등 그 밖 의 방법 을, 실사
적 으로 행위 함으로써 유형 의 특허 권, 특
제 권 을 침해 한 것 이다.

2) 사안

특 수 이 사건 이 마지 를 특 제 권 의 실사
적 으로 행위 함으로써 유형 의 특
제 권 을 침해 한 것 이다. (제22조 2항)

(2) 특 제 관 에 사 원 특 제 청 구

1) 특 제 청 구 의 의의 (제23조 10항)

공 공 의 구 성 원 에게 특 제 청 구 권 을 신 속 한 것 이다
원 에게 특 제 청 구 권 을 이 용 한 것 이다

2) 사안

특 수 이 사건 이 마지 가 특 제 청 구 권 을

작성 사건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송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22조 10호)

3. IP의 법적 책임

(1) IP의 지위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제 22조 3호 1호)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을 2 내외의 횟수
이상 이용자가 지정된 기점 사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전송하거나
저장하거나, 연결을 제공한 자로 **판단**한다.

(2) 형태의 공중보급행위 설립 예외 (1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공간에
저작물을 할당하는 회사의 사서리영리는
사정요건을 고려해 저작인 권에 대한
대간 보충책의 책임을 지는 수 있다. (제 22조)

(3) 방화벽 야간 공중보급행위 설립 예외 (제 22조 2호)

1) 방화벽 야간 공중보급행위 설립 (제 22조 2호)

저작권 침해 회사의 보충책의 ~~명백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된 사건으로
주체적으로 인식 및 관리 등자가 사적인
경우, 직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태도가
있을 시에, 방화벽 야간 공중보급행위 **책임**이
선립한다.

2) 조지의부가 있는 경우 (뒤 사례)

용어인(세비스지용어)가 지식재산권법 관련
피해가 크므로 구체적. 미법적인 미법
사제의 사관(부)를 받지 않나, 제시(권)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관리·통제할 수 없던 경우에는, 지정권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보지 않음.

(4) 방조죄의 성립 여부 (지주)

지주인 법이 보려는 목적권-전용권의 취해를
방조하는 각. 간접적 불응 관의를 안한다.

4. 불응의 개념

※ 방조나 정인의 공범불응행위의 죄는 변하지 않,
미판적 요건이 있는 경우 방조죄를 성립할 수 있다.

5. 불응 2)의 개념

용어인(세비스지용어)가 지정권 조처를 취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책임이 면제된다
(제 102조 2항)

0.5

II. 불응(2) 3.5

1. 부적 행위의 범주



<문제-37

16.5

I. 실문 (1)

1. 이 시문 설계도 저작물성

(1) 저작물 성립 요건 (구제2(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단순히 냉의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

(2) 저작물 종류 - 건축 저작물 (구제 405)

공표장 설계도 건축 저작물에 해당한다

(3) 기능적 저작물 창작성 판단 방법(위해)

기능, 실용적 사상의 표현은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그 실용적 목적에 의해서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판단한다

(4) 건축 저작물의 평가(위해)

건축 분야의 일반적 표현 방법으로 기능에 따라서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바, 창작자의 개성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저작물성 인정된다.

(5) 사안의 경우

① 甲의 콘크리트는 각 층마다 층어레이의 모양,
길이, 굽여진 방향, 각도 등의 개변 구성 등이
창출된 것이다



② 개별 창작 활동에 관한 생각은 신왕적 위상은
영국 왕적의 사상이 드러난 것이라 창조적
지적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③ 전통의 공표상의 저작물 인정되지 않은
신왕적 기능 이상의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
작성하다

2. 점진

특히 출판상 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로서 다른 저작물에
해당하며, 전체적 측면에 따라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인정될 수 있다

기능적 저작물이라
출판상 저작물이라
인정될 수 있다!
)

II 선문(2)

1. 창제요건

① 유용한 저작된 품목 등 ② 실질적 으 유용한
저작물은 ③ 이용가능하며 ④ 의의있게 갖 품의 향미
생각한다.

2. 유용한 저작된 품목 여부-적극

특히 자신의 출판상 저작물이 창조적 개성이 갖는 것
은 주장, 입증 하여야 한다

0.5

3. 실질적 유사성 및 의의관계 관측 -적극

- ① 같은 甲의 관조상은 그대로 반영하여 재현하였는바
- ② 실질적 유사성 존재하며 ③ 의의관계 또한 존재한다

반영 인정

4. 이항 행위 경질 - 복제, 개작 저작물 경질

(1) 복제 행위 여부 - 적극

1) 복제 의미 (저작권 22)

인쇄. 사진촬영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인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복제하는 행위는 말한다

2) 시안

같은 甲 저작물을 동형상을 반영하였는바, 유형물에 인시적으로 복제행위에 해당한다

1.5

(2) 개작 저작물 작성 여부 - 적극

1) 개작 저작물 작성의 의미 (저작권 22)

저작자나 그의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개작 저작물은 작성하여 이항한 자는 말한다

2) 요건

① 원저작물은 기저로 받기 ②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③ 새로운 창작성은 추가 새로운 것은 인정한다

2

3) 시안

① 乙의 개작 영상 저작물 甲의 관조상은 반영한다



것은 기판의 형상이고 ② 그대로 제형함으로써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며 ③ 소정의 온도 범위 3D 영상으로
제형한 바 새로운 형상이 부여되었다.

④ 따라서 개작 제형은 적당히 낫는다.

(3) 소견

같은 甲의 제형물을 복제, 개작 제형을 적당히 낫다

5. 결론

같은 甲제형물의 복제, 개작 제형을 적당히 낫다
칭응이 해당한다

II 서요(3)

1. 마모 제형물 복제에 해당한지 여부-소견

(1) 주특 ② 의의

개방된 장소에 형사 전시되어 있는 마모제형물
이러한 방법으로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사안

1) 甲 문드장이 개방된 장소인지 여부-소견

甲 문드장은 국제 대학가 연립식 건물 제1층에
늘어서 운영되는 바 이는 개방된 장소로 볼 수 있다
문드장이 개방된 장소에 형사 전시된 제형물로
볼 수 있다

2) 소견

제한 사유 법35 ②에 해당하지 않는다

0.5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법35의5) 예외-각

(1) 법35의5 의의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은 이용할 수 있다

(2) 고려 사항 (법 35의5 ②)

이때 법35의5 ②각항에 따른 사유들은 함께 고려하여 공정한 이용 인지 판단한다.

0.5

(3) 사항

- ① 이용의 목적이 상업적 목적이 해당 하고,
- ②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이며, 그 중요성이 적지 않
- ③ 같은 이른 무단으로 이용하였는 바.
- ④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⑤ 분은 정황되지 않

3. 결론 - 2항변 보당

법35 ②라 법35의5 모두 정황되지 않음
2의 항변은 부당하다

0.5

<끝>

[문제 4]

I 선문(1)

1. 권리관리정보 위반사항

(1) 권리관리정보 고지 (2조 29항)

저작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을 나타내는 숫자·부호로서
저작물 원본이나 복제물에 붙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2) 권리관리정보 제거·변경 금지 (104조 3)

저작권 ~~주~~ 침해 은닉·유발이라는 사실 알거나 과실로 안지 못하고
권리관리정보 고지로 제거·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
위를 행하는 안된다.

(3) 사안.

1) 바코드가 권리관리정보인지

~~바코드~~ 바코드는 해당 저작물이 권리 정보 담긴 것이므로 저작
물 식별하거나 저작권 기원사 식별, 저작물 이용방법에 관한 정
보를 바코드 형태로 나타내어 위반 복제물이 부각하는 것이
므로 권리관리 정보이다.

2) 104조 3 위반 여부

같은 대조본이어서 확인되나 바코드 제거되고 다시 바코드
붙였으므로 정해 위반되지만 사실 안에서 권리관리정보 고지
로 제거한 다시 거짓으로 부가하였으므로 104조 3 위반
이다.

2. 처분규정 검토

41 136조 2항 3의 4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으로 104조의 3 1항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실로 저각될 침해 유한 사실 안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2) 사안.

2도 라게 무사히 마치고 다시 도서와 관련한 바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위 처분규정에 처분받지 아니한다.

II. 선출(의)

1. 권리 저각방법 위반사항

(1) 라벨 의의(2조 35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은 나타내어주어 저작물이 유행저 복제물에 부착하는 표시이다.

(2) 라벨 부착 등의 금지(104조의 5)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라벨은 복제 분범복제물에 부착하기 위해 유행저는 행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안

1) 피지가 라벨인지.

피지는 서적등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출판된 서적임을 표시하여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어 위해 유행저 복제물에 부착하는 표시이므로 라벨이다.

2) 104조 5 위반여부

그러므로 영 A 불법복제물 부락하여 판매목적 표시이므로 반바
라본을 정당권한 없이 불법복제물 부락하기 위하여 위를 라본
위정한 것이므로 104조 5 위반이다.

2. 처벌규정 검토

4) 136조 2항 3다 6

104조 5 위반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예사안

그러므로 104조 5 위반하여 위(처벌규정)에 의해 3년이하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